

의안 번호	1329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7. 3. 8. (수)
-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7. 3. 10.(금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7. 3. 17.(금)

2. 개정이유

○ 이 조례의 상위법인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일부개정(개정 2016. 1. 6) 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'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에서 '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나. 기금의 용도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- 다.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행을 '구 구정조정위원회'에서 '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'에서 대행하도록 변경(안 제5조)

4. 근거법규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및 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의 상위법인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일부개정(개정 2016. 1. 6)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
2.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